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<개정 2023. 8. 3.>

## 표준임대차계약서

(6쪽 중 1쪽)

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자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※ 개업공인증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, 임차인, 개업공인증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: 2024년 09월 23일

## 1. 계약 당사자

임대사업자	성명(법인명)	박상례	30	(서명 또는 단)
	주소 (대표사무소 소재지)	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4가길 17 (신림동)		
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420801-2074215	전화번호	010-5321-2055
	임대사업자 등록번호	2019-관악구-임대사업자-499		
임차인	성명(법인명)	김민지 (서울당수 인		
	주소	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21-8 109동 1201호		
	주민등록번호	981224-2419522	전화번호	010-6208-0005

## 2. 공인중개사 (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)

개업공인	사무소 명칭	낙원공인증개사		( acc
	대표자 성명	박선호 의신	3	(사영 및 인)
	사무소 소새시	서울특별시 판약구 전사보20길 53,1승(전림동)		100
	등록번호	11620-2021-00224	전화번호	02-837-1977

- ◆ 해당 주택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수백 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.
- o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3조)
-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, 그 기간 동안 에는 양도가 제한 됩니다.
- o 임대료 중액 제한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4조)
-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,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「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.
- o 임대차계약의 해제·해지 등 제한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5조)
- 임대사업자는 임사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- 임차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
